
조선 후기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경아전의 관계망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 I . 머리말
- II . 고신의 작성자, 서리
- III . 단골리의 등장
- IV .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단골리와의 관계
- V . 맺음말

국문요약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고문서 중의 하나가 관리의 임명장인 告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문서 연구자들은 고신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으며 또 고신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고신의 내용 중에는 아직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신 뒷면에 기재된 ‘吏吏’ 혹은 ‘兵政吏’가 그것이다. 이들은 고신을 작성해주는 이조와 병조의 서리인데 관리들과 아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서로 공생하였기 때문에 丹骨吏라 칭해 지기도 했다. 즉 이조와 병조의 서리들은 관리들에게 임명장을 작성해주고 또 인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리들은 서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거나 각종 선물 등을 보내주었다. 고신 뒷면에 나오는 이리와 병정리에 대한 기록은 바로 이와 같은 공생 관계를 은밀하게 보여주는 단서이다.

주제어 이조, 병조, 문무관리, 관계망, 고신, 단골리, 이리, 병정리, 인사담당자, 지방 명문(地方名門)

투고일자 2013년 8월 16일 심사일자 2013년 9월 4~16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0월 4일

I. 머리말

조선시대에 작성된 여러 종류의 문서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관리 임명장인 고신이다. 고신은 국왕이 문무 관리를 임명할 때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이를 받는 관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해 있던 가족이나 가문 역시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때문에 그의 가문이나 후손들은 국왕으로부터 받은 고신을 다른 어느 문서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고문서 연구자들도 고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그간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으며¹⁾ 그 결과 고신에 대한 이해가 크게 확대되고 또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신의 내용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특히 고신의 뒷면[背面]에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자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고신 뒷면 한 모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록된 ‘吏〇〇〇’이나 ‘兵吏〇〇〇’ 혹은 ‘兵政吏〇〇〇’이 그것이다. 예컨대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는 姜柏年 고신의 뒷면에 ‘吏〇〇〇 沈麒’라는 기록이 있는데 ‘심기’는 인명으로 판단되나 ‘이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이리와 병리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이 글을 통해 밝혀지는 바와 같이 ‘吏曹政色書吏’와 ‘兵曹政色書吏’를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서리 이름이 문무 관리의 고신에 쓰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뒷면의 한 모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쓴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등등

1)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진단학보』 60, 1985; 박재우, 「고려시대의 고신과 관리임용체계」,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김은미, 「조선 후기 교지위조의 일연구」, 『고문서연구』 30, 2007; 矢木毅, 『高麗時代の銓選と告身』,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김형수, 「고려후기 李子脩 官職 任用資料 4집」,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박준호, 『예의 패단: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川西裕也, 『『頤齋亂藁』 辛丑日曆 소재 麗末鮮初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2010; 심영환 외,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밝히고 이를 통해 지방 명문 출신의 문무 관리와 중앙의 경아전 사이의 긴밀한 聯網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II. 고신의 작성자, 서리

문무 관리의 고신은 시기에 따라 양식과 명칭이 조금씩 달랐으나³⁾ 이를 작성한 이조나 병조의 서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고신에 자기의 성을 쓰고 착압하는 것은 고려 말까지 올라간다.⁴⁾ 현재 고신의 실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족보 등에 轉寫되어 전하는 고려 시대의 관리 임명문서를 살펴보면 거기에 서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李滉(1501~1570)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조상 李子脩의 조사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司上朝謝斜准
 司憲府錄事安天壽 洪武九年十月日名貼 洪武九年
 七月十二日下 批 李子修爲奉順大夫 判書雲觀事 朝謝由
 出納爲等以 施行 印
 唱
 准
 權知堂後官 (押)⁵⁾

2) 조선시대 서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신해순, 「조선초기의 하급서리 '이전」, 『사학연구』 35. 한 국사학회, 1982; 김호동, 「조선전기 경아전 '서리'에 관한 연구」, 『경남사학』 창간호, 1984; 유봉학, 「일록 '공사기고'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상」, 『규장각』 13, 1990; 강명관, 「조선 후기 경아전사회의 변화와 여향문학」, 『대동문화 연구』 25, 1990; 오중록, 「조선전기의 경아전과 중앙행정」, 『고려·조선전기 중인연구』, 신서원, 2001; 원재영, 「조선 후기 경아전 서리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3) 여말선초의 고신의 변천에 대해서는 심영환 외, 2011, 앞의 책, 16~65쪽 참조.

4) 위에서 소개한 박재우, 矢木毅, 김형수, 박준호, 川西裕也, 심영환 등의 글 참조.

5) 심영환 외, 2011, 앞의 책, 120쪽.

이 조사문서는 왕이 1376년(우왕 2)에 이자수를 奉順大夫 判書雲觀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것으로 고려시대 문무 관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임명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왕이 이 해 7월 12일에 이자수를 위의 관직에 임명했다. 이어 사헌부에서 이자수가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보고 합당한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같은 해 10월에 사헌부의 錄事 安天壽가 이 사실을 典理司에 통보했다. 전리사는 조선시대의 이조처럼 문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사헌부의 통보에 따라 이자수에게 위의 조사문서를 작성해 발급했다.

이 조사문서의 작성자는 ‘唱’과 ‘准’으로 표기된 전리사의 두 令史였는데,⁶⁾ 조사의 내용을 한 명이 불러주고 다른 한 명이 이를 받아쓰며 확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했다. 15세기 조사문서나 傳准立案 및 準戶口를 살펴보면 창준한 담당 서리들이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쓰고 押을 했는데⁷⁾ 14세기 말에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창준이라는 글자만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조사문서를 작성한 서리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전리사와 軍簿司에서 하던 문무 관료의 인사를 이조와 병조에서 했으나 명의 제도를 참조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조사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1402년(태종 2)에 왕이 申士廉을 餘美監務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여미는 충청도 海美의 옛 지명이다.

吏曹爲朝謝准事 司憲府吏房書吏李符永永樂元年二月初
五日名關 永樂元年正月初七日下午
批 申士廉爲宣務郎 餘美監務 兼勸農兵馬團練判官
朝謝由移關爲等以 合行故牒 須至故牒者
右故牒
餘美監務申
永樂元年二月初六日
朝謝准事
吏房令史 石(着名)

6) 위의 책, 52~58쪽.

7) 정구복 외, 『조선전기고문서집성-15세기편-』, 국사편찬위원회, 1997, 256쪽, 276쪽.

議郎(押) 正郎 佐郎(押)

牒 判事 典書(押) 知事

議郎 正郎(押) 佐郎(押)⁸⁾

이 고첩의 양식은 위에서 살펴본 고려말의 조사문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洪武禮制』의 故牒式을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홍무예제』의 고첩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某衛指揮使司 爲某事云云 合行故牒 可照驗施行 須至故牒者

右故牒

某 府

洪武 年印月 日

某事

同知押 僉事押

牒 指揮使押

同知押 僉事押⁹⁾

이 고첩식을 신사림의 조사문서와 대조해보면 ‘某衛指揮使司’는 ‘吏曹’로, ‘爲某事云云’은 ‘爲朝謝准事~移關爲等’으로 ‘某府’는 ‘餘美監務 申’으로, ‘洪武 年 月 日’은 ‘永樂元年 二月初六日’로 ‘某事’는 ‘朝謝准事’로, ‘指揮使’ 이하의 관리들은 조선의 관직 체계에 맞게 ‘判事’ 등으로 바뀌었을 뿐 『홍무예제』의 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하면 <표 1> 같다.

8) 위의 책, 140쪽.

9) 이현구, 『국역 홍무예제』, 회상사, 1986, 80~81쪽.

10) ‘照驗施行’ 앞에 있는 ‘可’ 자는 조선시대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홍무예제』 고첩식과 신사렴 고첩 비교

구분	『홍무예제』 고첩식	신사렴의 고첩
발급자	某衛指揮使司	吏曹
문서발급목적	爲某事云云	爲朝謝准事~移關爲等以
수령자	某府	餘美監務 申
발급시기	洪武 年 月 日	永樂元年 二 月 初六日
문서의 성격	某事	朝謝准事
결재란	指揮使(押) 등	判事(押)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의 조사문서는 중국의 『홍무예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다만 관직명이 조선의 체제에 맞게 수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고신을 작성했던 서리가 『홍무예제』의 「고첩식」에서는 빠져 있으나 신사렴 조사문서에서는 吏房令史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방령사는 고려 말 조사문서에 나오는 ‘창준’과 같은 서리로 추정되는데 다만 창준은 두 명이었으나 이방령사는 한 명으로 바뀌었으며 또 자신이 작성한 고신에 성을 쓰고 착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리가 문무 관리의 고신에 자신의 성을 쓰고 착명했다는 점은 고신 작성자로서의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들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상승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조와 병조의 서리가 자신이 작성했던 문무 관리의 고신에 성을 쓰고 착명하는 것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다만 이방령사 혹은 병방령사가 文選司 令史¹¹⁾ 혹은 武選司 令史¹²⁾로 명칭이 바뀌고 고첩 대신 帖¹³⁾과 關¹⁴⁾의 형태로 작성되기도 하지만 양식은 거의 동일했다. 또 용어와 문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朝謝’를 ‘告身’으로 바꾸고 吏讀를 사용하지 않고 吏文 투식에 따라 작성했다.¹⁵⁾

현존하는 문서에 의하면, 고신의 형태가 크게 변한 것은 1468년(예종 즉위) 무렵부터이다.¹⁶⁾ 이 해 10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鄭玉堅을 將仕郎에서 從仕郎으로

11) 심영환 외, 2011, 앞의 책, 152쪽.

12) 위의 책, 162쪽.

13) 위의 책, 156쪽.

14) 위의 책, 150쪽.

15) 위의 책, 192쪽.

16) 위의 책, 27쪽.

승품시켜 주었다. 장사랑과 종사랑은 모두 東班 품계로 전자는 중 9품이며 후자는 정 9품이다.

吏曹奉
 敎將仕郎鄭玉堅爲從仕郎
 成化四年十月初六日
 行正郎臣金(押)
 判書 叅判臣(押) 叅議
 行佐郎¹⁷⁾

위 고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려와 명의 양식을 수용했던 이전의 양식과 크게 달라졌는데 무엇보다도 사헌부의 署經 과정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양식은 1466년(세조 12)에 완성된 『丙戌大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이 『병술대전』의 수정본이 바로 『경국대전』이다. 이 고신 양식은 후에 『경국대전』 「예전」에 수록되어 조선 나름의 고신 양식이 되었으며 대한제국기에 고신 제도가 크게 바뀌기 이전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위의 고신을 『병술대전』의 고신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대전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고신식과 비교해보자.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고신은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식을 따랐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某曹某年某月某日奉
 敎具官某爲某階某職者
 年 印 月 日
 判書臣某 叅判臣某 叅議臣某 正郎臣某 佐郎臣某¹⁹⁾

17)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7쪽.

18) 심영환 외, 2011, 앞의 책, 28쪽.

19)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정옥견의 고신을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식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신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관직을 수여하는 고신이 아니라 陞品을 해주는 고신이기 때문에 관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왕의 명령을 받은 날짜[某年某月某日]와 본문의 끝에 나오는 종결사 ‘者’ 자가 누락되어 있다.

표 2 『경국대전』의 고신식과 정옥견의 고신 비교

구분	『경국대전』 고신식	정옥견의 고신
발급자	某曹	吏曹
奉命日	某年某月某日	
舊職銜	具官	將仕郎
新職銜	某階某職	從仕郎
발급년월일	年 月 日	成化四年十月初六日
終結辭	者	
결재란	判書臣某 ……	判書 ……

그러나 이 이후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된 고신들을 살펴보면 위의 고신과는 약간 다르다. 1476년(성종 7)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정옥견을 敦勇校尉에서 彰信校尉로 陞品해주면서 발급한 아래의 고신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용교위는 西班 정 6품 上位이며 창신교위는 중 5품 下位이다.

兵曹成化十二年七月初一日奉
 敎忠贊衛敦勇校尉鄭
 玉堅爲彰信校尉者
 丙當仕加 好賢坊
 成化十二年九月十四日 書吏臣林(押)
 參議臣成(押) 行正郎
 判書 參判
 參知 行佐郎臣崔(押)²⁰⁾

20)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29쪽.

이 고신을 정옥견이 이전에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사실이 더 기재되어 있다. 그것은 고신 발급의 이유, 수령자의 거주지, 고신작성자이다. 고신 발급 이유에 해당하는 ‘丙當仕加’는 이 고신을 발급하는 1476년 병신년에 충찬위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품시켜준다는 내용이다. ‘好賢坊’은 한성부 남부에 있던 11방 중의 하나인데 이는 당시에 정옥견이 거주했던 곳이다. 또 ‘書吏臣林’은 고신을 작성한 서리 林某로 병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재 내용 중 두 가지 즉 고신 수령자의 거주지와 고신 작성자에 대한 내용은 고신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1555년(명종 10)에 金玄貞에게 발급된 고신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이 기재되나²¹⁾ 그 이후에 발급된 고신에는 발급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쓰는 관행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신 발급 이유를 기록하는 관행은 고신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대한제국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기록되었다. 다만 고신 발급 이유를 쓰는 위치가 문관과 무관이 달랐다. 문관은 연호의 왼쪽에 그리고 무관은 연호의 오른쪽에 썼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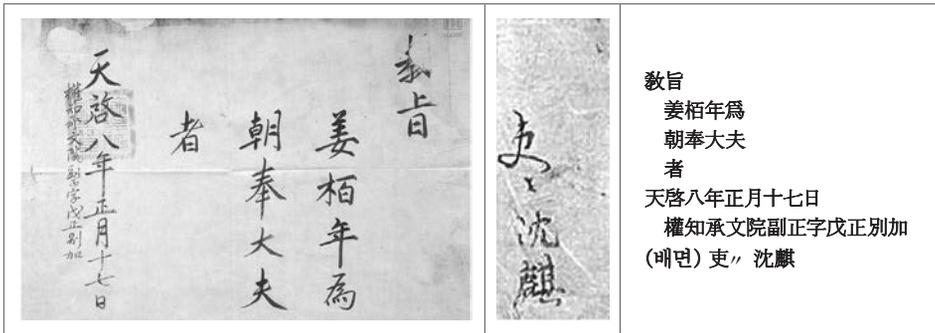
서리의 이름이 문무 관리의 고신 전면에 쓰여 있다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은 그들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에는 그들의 지위가 문무 관리보다 못했지만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작성한 고신 전면에 자신의 성을 써넣고 일종의 서명인 ‘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기반이 점차 굳건해지고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방에서 향리의 지위가 하락한 것처럼 중앙에서 서리의 지위도 그러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에 성을 써넣거나 당당하게 서명하던 예전의 모습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서리의 이름이 고신의 앞면에서 사라진 이후 영영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지지는 않았다. 서리의 이름이 고신 뒷면의 한 모서리에 조그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고신을 살펴보도록 하자.²³⁾

21) 『고문서』 1, 서울대학교도서관, 1986, 161~162쪽, No. 5.

22) 최승희, 1982, 앞의 책, 73쪽.

23) 『고문서』 1, 200쪽, No. 201.



教旨
 姜栢年爲
 朝奉大夫
 者
 天啓八年正月十七日
 權知承文院副正字戊辰別加
 (배면) 吏 沈麒

위 교지는 1628년(인조 6) 정월에 국왕이 강백년을 朝奉大夫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해 준 것이다. 강백년은 바로 전년에 庭試에서 乙科 2위로 급제했으며 실무를 익히기 위해 임시로 승문원에 副正字로 배속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문과에 급제하면 곧바로 三館 즉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했다. 이를 分館이라 했는데 정식 관리가 되기 전에 일종의 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문과에 급제할 당시 강백년은 아무런 품계가 없는 幼學이었다.²⁴⁾ 과거 시험이 전년 즉 1627년(인조 5) 7월 29일에 행해졌으므로 그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이와 같이 초고속으로 승급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아버지 姜籜 역시 문과 급제자였기 때문에²⁵⁾ 代加 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에 정 5품 상위인 通德郎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새해 정월에 승문원 부정자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 특별히 품계가 한 등급 더 올라서 중 4품 하위인 조봉대부가 된 것이다. 위 문서에 나오는 '戊辰別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정'은 인조 6년 戊辰年 정월을 의미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신의 뒷면에 기록된 '吏 沈麒'이다.²⁶⁾ '이리'는 이조정색서리이며 '심기'는 그의 이름이다. 고신의 앞면에서 사라진 서리의 이름이 뒷면 한쪽 모퉁이 하단에 슬며시 나타난 것이다. 서리의 이름이 문무 관리에게 발급되는 고신의 앞면에서 사라진지 얼마 되지 않아 뒷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국조문과방목』 2(태학사, 1984), 7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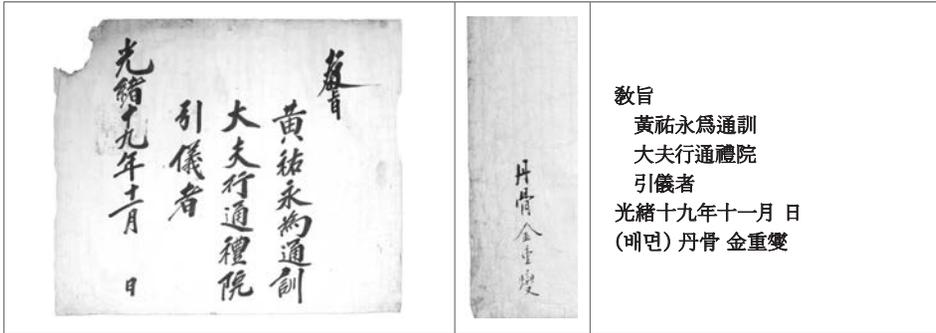
25) 『국조문과방목』 1(태학사, 1984), 588쪽.

26) 『고문서』 1, 위 책에는 '吏 金麒'로 되어 있으나 오자가 확실하여 필자가 임의로 수정하였다.

서리의 이름이 문무 관리의 고신에 쓰였다는 사실은 조선 전기나 후기에 같았으나 차이도 상당했다. 첫째, 조선 전기에는 서리의 이름이 고신 앞면의 가운데에 기재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뒷면 한 모퉁이에 기록되었다. 둘째, 서리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조선 전기에는 공개적이고 공적이었던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비공개적이고 사적이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리나 병리들은 고신의 배면의 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던 것이다. 셋째, 조선 전기에는 서리가 성만 쓰고 작명을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름을 다 쓰되 작명하지 않았다. 넷째, 조선 전기에는 문무관 5품 이하의 고신에만 그들의 이름을 썼으나 조선 후기에는 5품 이하의 고신 뿐만 아니라 4품 이상의 고신에도 이름을 써넣었다.

Ⅲ. 단골리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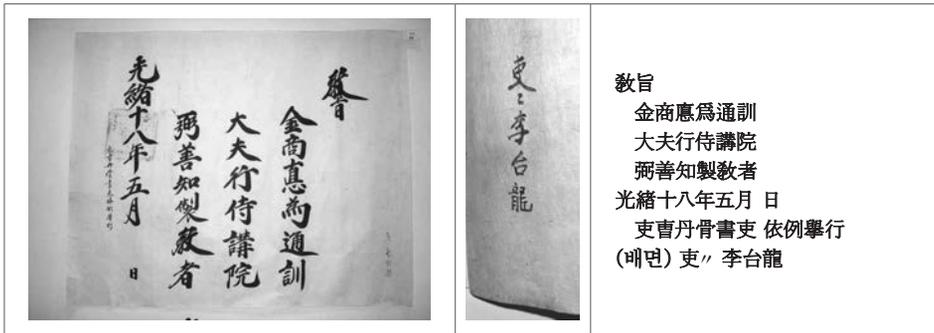
필자가 이조와 병조에서 고신을 작성하는 서리에 대해 주목하는 까닭은 이들이 고신 작성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곧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들과 대대로 관계를 맺는 단골리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 출신의 관리나 양반들은 이조나 병조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들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의 인사 동향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서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분을 맺으려고 했으며 또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이 緣網을 대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대대로 교분을 맺는 서리들을 자칭 혹은 타칭으로 ‘단골’ 또는 ‘단골리’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고신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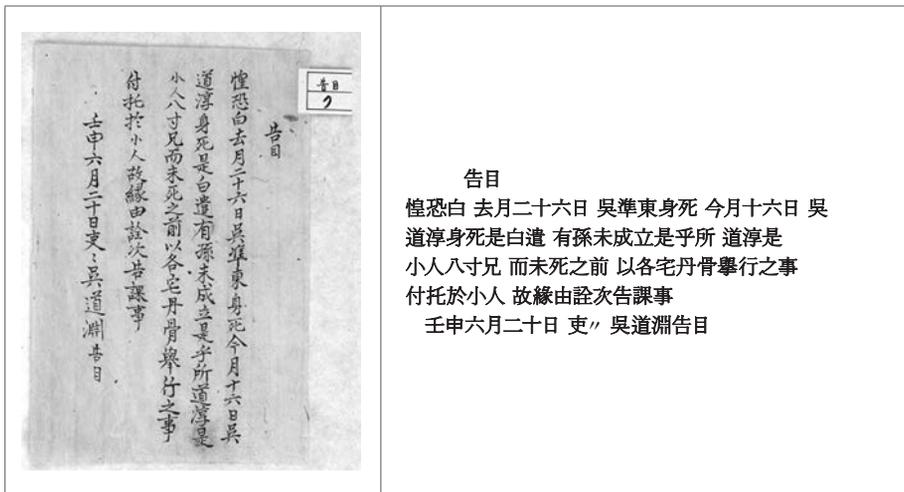
教旨
黃祐永爲通訓
大夫行通禮院
引儀者
光緒十九年十一月 日
(배면) 丹骨 金重燮

위 고신은 1893년(고종 30) 11월에 국왕이 黃祐永을 通訓大夫 行通禮院 引儀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통례원은 朝會와 제사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는 부서이며 인의는 종 6품직이었다. 통례원 인의가 문반직이었기 때문에 고신 작성자는 이리였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배면에 ‘吏〃 金重燮’이라고 썼다. 그러나 황우영의 고신 뒷면에는 위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丹骨 金重燮’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고신을 작성하는 서리와 이를 수령하는 문무 관리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자칭 혹은 타칭으로 ‘단골’이라 호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시에는 사적인 자리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단골 관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리’라는 공적 호칭보다 ‘단골’이라는 사적 칭호를 기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조나 병조 서리가 자신이 작성한 고신의 앞면에 버젓이 단골리라는 호칭을 쓴 예도 있다. 아래의 고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은 1892년(고종 29)에 金商憲을 ‘通訓大夫 行侍講院 弼善 知製教’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 고신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年號 다음에 쓰인 ‘吏曹丹骨書吏 依例舉行’이다. 이는 ‘이조의 단골서리가 관례에 따라서 고신을 작성했다’는 뜻인데 고신 뒷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김상덕의 단골리는 吏〃 李台龍이었다. 추측컨대 이태룡이 이조의 서리가 되자 관례에 따라 단골 관계를 맺고 있는 문반 관리들의 고신을 작성하면서 그 사실을 고신의 앞면에 밝혔던 것이다. 원래 이러한 내용은 고신의 앞면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마 이태룡이 처음으로 서리가 되어 고신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김상덕과 이태룡이 단골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단지 김상덕과 이태룡 개인간에 그치지 않고 집안 간에 대를 이어가며 이어졌기 때문에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단골리의 관계를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고목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목은 하급 관리나 아랫사람들이 상관이나 윗사람에게 올리는 문서로 간단하게 보고하거나 혹은 문안을 드릴 때 주로 사용했다. 이 고목은 전라도 해남의 해남윤씨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壬申年 곧 1812년(순조 12)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위 고목의 내용에 의하면, 吳準東과 吳道淳은 해남윤씨의 단골리였다. 그런데 이들

27) 『해남윤씨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24~425쪽, 고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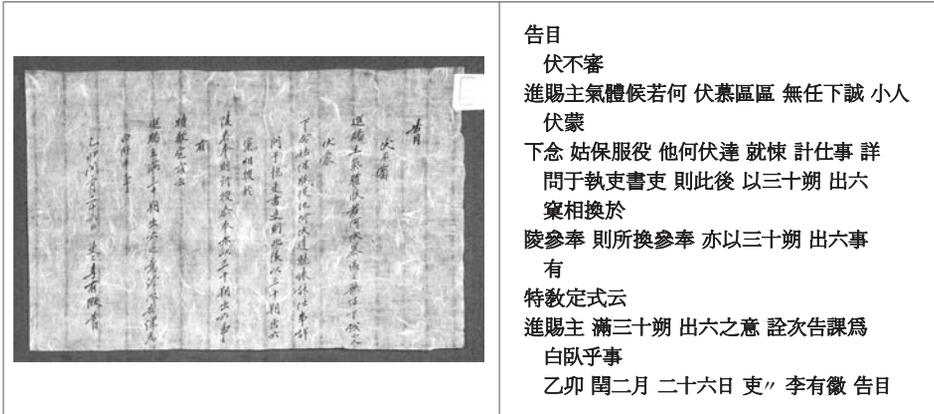
이 연이어 사망하고 그의 후손은 아직 어려서 서리가 되지 못했다. 오도순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8촌 동생인 吳道淵에게 단골 집안을 일일이 알려주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단골 노릇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오도연은 형이 사망하자 곧바로 지방에 있던 형의 단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형의 뒤를 이어 단골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오준동을 비롯한 이들 세 명은 관리의 인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해남윤씨에게 알려주며 또 해남윤씨들이 관리로 임명되면 각종 고신 등을 작성해 주고 그 배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吏吏 오아무개’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이다.²⁸⁾

물론 고신의 배면에 ‘이리’ 또는 ‘병정리’ 아무개라고 밝혔다 해서 모두 단골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양쪽 즉 고신 수령자인 문무 관리와 서리가 서로 단골 관계를 형성할 의지가 있고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야만 고신 수령자와 작성자의 단순한 관계에서 긴밀한 단골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신을 작성한 서리가 그 배면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는 것 자체가 고신의 주인공인 지방 양반과 단골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서리가 사적으로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고목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면 그 둘은 이미 단골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IV.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단골리와의 관계

이제 고신 수령자와 서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서리들은 지방 명문 출신의 문무관리들에게 인사와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고 문무 관리들은 서리의 뒤를 봐주는 등 사적인 관계망을 형성했던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은 이와 관련된 고문서이다.

28) 해남윤씨가에는 오도연이 단골서리로서 작성했던 고신이 있는지는 고신의 배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다. 대신 서울대 규장각에 그가 작성한 고신이 남아 있는데 참고로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敎育/李閔彬爲/嘉善大夫/者/ 道光二十五年 正月初三日/朝官年八十 依定式加資/(배면) 吏//吳道淵(『고문서』 1, 416~417쪽, No. 1515).



告目
 伏不審
 進賜主氣體候若何 伏慕區區 無任下誠 小人
 伏蒙
 下念 姑保服役 他何伏達 就悚 計仕事 詳
 問于執吏書吏 則此後 以三十朔 出六
 窠相換於
 陵參奉 則所換參奉 亦以三十朔 出六事
 有
 特敎定式云
 進賜主 滿三十朔 出六之意 詮次告課爲
 白臥乎事
 乙卯 閏二月 二十六日 吏〃 李有徽 告目

이 고목은 李有徽라는 이조의 서리가 을묘년 즉 1795년(정조 19) 윤 2월에 林鴻遠(1741~1799)에게 보낸 것이다.²⁹⁾ 임흥원은 후에 弘遠으로 改名하였는데 그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世系單子를 살펴보면 그는 監役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³⁰⁾ 그러나 그가 실제로 역임했던 관직은 假監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역과 가감역은 모두 繕工監에 소속된 관리였으나 가감역은 임시직이었다.³¹⁾

이 고목의 내용에 의하면, 임흥원은 벼슬살이를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만일 30개월을 넘기면 '出六'할 수 있었다. 출육이란 6품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관직 체계에서 6품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6품 이상을 參上官이라 하고 7품 이하를 參下官이라고 했는데 6품에 오르면 臺臣으로 선발되거나 지방의 수령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급관리들은 6품으로 승진하는 것을 매우 열망했다.

조선시대에는 승품 즉 품계를 올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임흥원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단골리 이유휘를 통해 담당 서리에게 이를 문의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유휘는 이를 담당하는 서리 즉 執吏書吏에게 문의하여 30개월이 지나면 6품에 오를 수 있으며 또 도중에 능참봉

29) 『고문서집성』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71쪽.

30) 祖通訓大夫行陽川縣令初仕監役 弘遠(『고문서집성 67-나주회진나주임씨창계후손가편』, 310쪽).

31) 정조 18년(1794) 12월에 작성된 선공감 褒貶單子를 보면 당시 선공감 관리들의 성과 포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역관의 성은 尹, 李, 鄭이며 가감역의 성은 洪, 徐, 林이다. 또 당시의 선공감 관리 중에 성을 林으로 하는 사람이 가감역 단 한 사람 밖에 없다. 따라서 가감역관 중 임씨는 임흥원이 분명하다. 이 포폄단자에 대해서는 위의 책, 116쪽 참조.

으로 벼슬이 바뀌더라도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30개월만 넘으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승품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고 방법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담당 아전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실록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영의정 金致仁이 아뢰기를, …… “근일에 銓衡의 규범이 점점 무너져서, 文臣이 겨우 6품에 오르면 臺臣으로 뽑힐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심지어는 성균관의 정 6품인 典籍을 곧바로 사헌부의 정 5품 持平의 후보자로 추천하기까지 하며, 새로 문과에 합격한 자[新榜者]가 승문원이나 성균관 및 교서관에 나뉘어 실무를 익히기 전에는 …… 어떤 관직에도 제수될 수 없는 것이 옛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정기 인사 때나 임시 인사 때, 조금도 꺼리지 않고 계속해서 천거합니다. 그리고 蔭官의 품계를 올려줄 때에도 벼슬한 기간과 차례를 보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李世白이 정승으로 있을 적에 6품이 된지 19개월 만에 5품에 오른 음관이 있자 이세백은 너무 빠르다 하여 관계자들을 잡아가두고서 치죄했다 하니, 銓曹의 품격이 엄격함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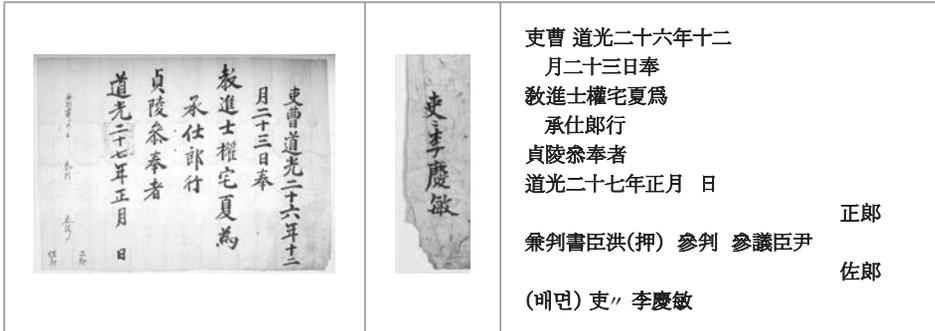
6품이 된 지 겨우 19개월 밖에 안 된 음관이 5품에 추천되었다는 것은 바로 관리의 승진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중간에서 마음대로 농간을 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의 승진이나 승품의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일반 관리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반면에 담당 서리들은 그와 관련된 규정이나 세칙 등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흥원이 이유회를 통해 담당 서리에게 출육과 관련된 규정을 문의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실정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서리들이 중간에서 얼마든지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단골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서로 도모했는지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경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에는 닥실권씨로 널리 알려진 안동권씨들이 세거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 초기의 유학자 權櫟(1478~1548)의 후손들인데 닥실[西谷]은 실제로 奉化縣에 있었으나 안동의 飛入地였던 관계로 조선시대 내내 안동부에 속해 있었다. 권벌의

32) 정조 12년(1788) 1월 5일 무진조. 『조선왕조실록』 45책, 682쪽.

후손 중에 權宅夏(1799~?)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1840년(헌종 6)의 式年試에서 생원에 합격했다.³³⁾ 그 후 음직으로 벼슬길에 올라 貞陵叅奉과 의금부 都事 등을 역임한 후 예안현감에 임명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고신을 살펴보면 그의 단골리는 처음에 李慶敏이었다. 이는 다음의 고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에서 1846년(헌종 12) 12월에 왕명을 받들어 진사 권택하를 承仕郎 行貞陵叅奉에 임명했는데 이 고신은 그때 발급된 것으로 발행 시기는 이듬해 정월이며 고신을 작성한 서리는 이경민이었다. 그런데 이 고신에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점은 권택하가 분명히 1840년의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신에서는 그를 '진사'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일반 유생을 생원이라 부르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³⁴⁾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생원시 합격자도 모두 진사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고신과 같은 공식문서에서 이와 같이 생원시 합격자를 진사로 부르는 점이 주목되는데 아무튼 권택하를 정릉참봉으로 임명하는 고신을 작성한 서리는 이경민이었다.

그러나 권택하는 도중에 단골리를 吳相麟으로 교체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고신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33) CD 사마방목 참조.

34) 國言謂士爲書房 尊老書房爲生員(『崔生員傳』, 『桃花流水館小稿』).



敎旨
權宅夏爲朝奉
大夫行義禁府
都事者
咸豐元年四月二十七日
(배면) 吏 吳相麟

1851년(철종 2) 4월에 왕은 권택하를 조봉대부 행의금부도사로 임명하고서 고신을 발급했는데 이 고신 작성 서리는 이조정색서리인 오상린이었다. 권택하가 왜 단골리를 이처럼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권택하가 그 후 오상린과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오상린이 이경민보다 중앙 정계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오상린은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관리들과 복수의 단골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서리들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단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오상린은 권택하 이외에도 宋永老(1803~1881), 金完植(1771~?), 申耆永(1805~?) 등의 단골리였다. 송영노는 학자이자 문신인 宋浚吉(1606~1672)의 후손으로 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라 1844년(헌종 10)에 景慕宮 令, 文化縣令, 氷庫別提, 活人署別提, 古阜郡守, 高陽郡守 등에 제수될 때까지 20여 년간 오상린이 단골리 역할을 했다.³⁵⁾ 김완식은 우의정을 역임한 金錫靑(1634~1684)의 후손으로 1847년(헌종 13)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과 성균관, 승정원과 6조의 중요 직책에 임명될 때마다 오상린이 단골리 역할을 했다.³⁶⁾ 申耆永(1805~?)은 학자 출신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申欽(1566~1628)의 후손인데, 1865년(고종 2)에 선공감의 가감역으로 임명될 때 오상린이 단골리로서 역할을 했다.³⁷⁾ 이처럼 오상린은 京華士族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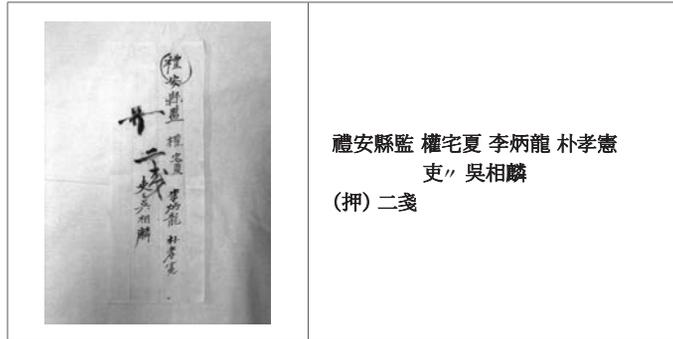
35)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83, 2006, 111~114쪽 참조. 다만 배면이 영인되지 않아 단골리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데 한국학자료센터에 올려진 자료를 통해서 고신의 배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6) 서울대학교도서관, 『고문서』 1, 473~479쪽.

37)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Ⅲ, 210쪽. 오상린이 신기영의 단골리 역할을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지만 오씨와 신기영의 집안 대대로 단골리로서 역할을 했음은 이 책에 수록된 고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단골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계에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한 정보 수집력 또한 뛰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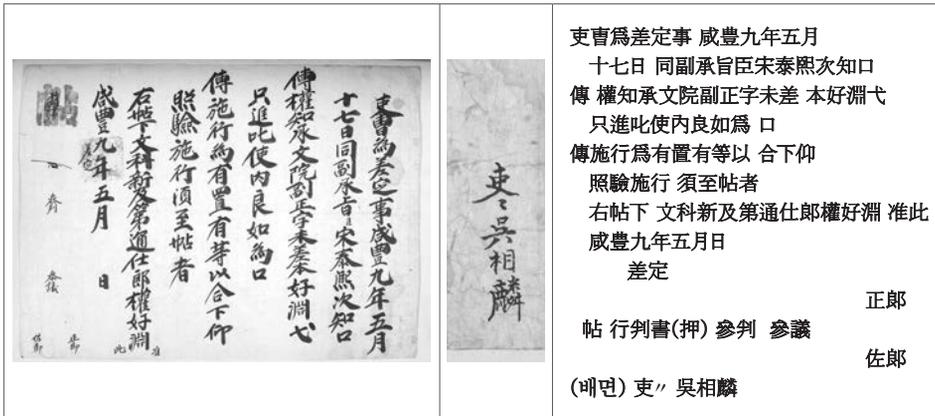
아무튼 권택하는 이처럼 단골리를 바꾼 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안현감에 임명되었다.³⁸⁾ 권택하가 예안현감으로 임명되기 전에 오상린이 보낸 편지에 동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예안현감 물망에 오른 세 명의 후보자 명단으로 끝에 '이리 오상린'이라고 쓰여 있는 점으로 보아 그가 권택하에게 후보자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택하가 그토록 바라던 예안현감 자리에 수망으로 올랐으니 이 소식을 알리는 오상린으로서도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권택하는 오상린이 보내준 이 문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안현감에 임명된 후, 그에 대한 보상으로 2羹을 내려주라고 담당자에게 명령하고서 그 위에 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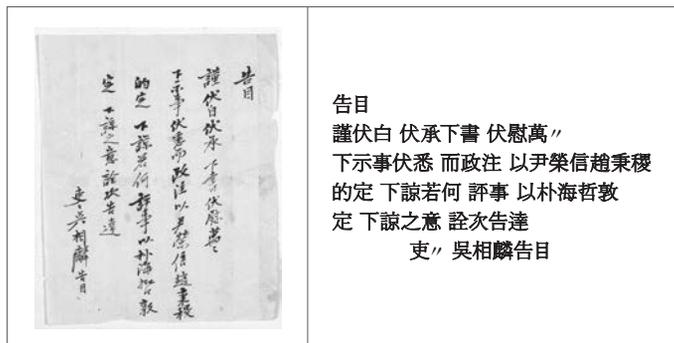
권택하의 아들 權好淵(1824~?)은 아버지가 오상린과 맺은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호연은 1859년(철종 10)의 증광시 문과에 丙科 15인으로 급제했다. 급제 당시에 그는 진사였으나 정8품인 通仕郎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代加로 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관례에 따라 관리로서 실무를 익히기 위해 副正字로 承文院에 배속되었다. 이때 권호연에게 발급된 고신이 현재 전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8) 敎旨「權宅夏爲通訓」大夫行禮安縣「監者」咸豐四年六月二十五日「(매면)吏」吳相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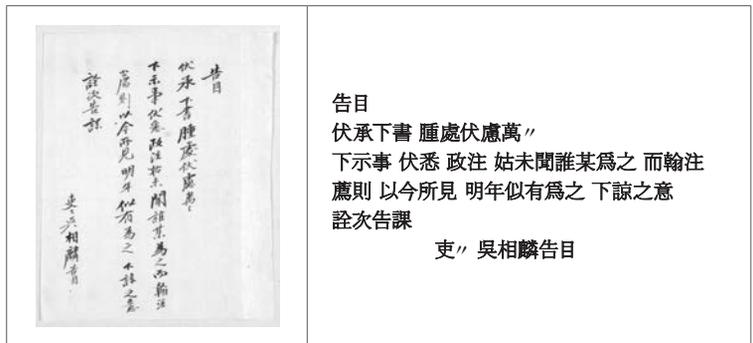
위 帖에 의하면, 同副承旨 宋泰熙는 같은 해 5월 17일에 왕으로부터 꺾식 중인 승문원 부정자 자리에 새로 급제한 권호연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를 이조에 전달하자 이조에서는 이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권호연을 승문원 부정자로 임명하는 첩을 발급했다. 물론 이전에 이미 이조에서 권호연을 승문원 부정자로 임명토록 추천한 바 있었으며 그에 따라 승지가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이조에 알렸기 때문에 이 임명장이 발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첩을 작성해 준 사람이 바로 오상린이었다.

권호연의 후손가에 전하는 문서를 살펴보면 권호연은 자신의 관직 진출을 위해 단골리인 오상린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고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권호연은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사철이 다가오자 政注 즉 승정원의 注書에 임명되기를 내심 바라고서 오상린에게 이러한 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는 지

시를 내렸던 것 같다. 승정원 주서는 정7품 문관직이었으나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문과 출신들이 선호하는 자리였다. 北評事는 정6품 무관직인데 권호연이 직접 이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의 주위에서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인물이 있어서 오상린에게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그는 승정원의 주서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임명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오상린에게 인사철이 닳칠 때마다 독촉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고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권호연은 문과 출신자였기 때문에 정주나 翰注에 대해 커다란 관심이 있었다. 정주 즉 승정원 주서는 비록 분주한 직책이었지만 언제나 국왕을 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初入仕의 관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주 즉 예문관 檢閱은 淸顯職이었기 때문에 역시 모든 관리가 임명되고 싶어하는 열망의 자리였다. 그래서 그는 오상린에게 자신이 이러한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상린은 이에 대해 여러 사실을 알아본 뒤 정주에 누가 임명되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으며 한주에는 내년 쯤 추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권호연은 승문원 부정자에 이어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은 그가 1865년(고종 2) 2월에 이조로부터 받은 교첩을 보면 알 수 있다.³⁹⁾ 이와 같이 권호연은 단골리로부터 여러 정보를 듣고 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관직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39) 吏曹 同治四年二月二十日 奉教 權知承文院副正字權好淵 爲通德郎行承政院注書 兼春秋館記事官者 同治四年二月日 判書臣姜(押) 參判 參議 正郎 佐郎

다음에는 일기를 통해 지방양반과 단골리의 관계를 살펴보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의 한 사람인 頤齋 黃胤錫(1729~1791)은 평생 동안 일기를 써서 『頤齋亂藁』라는 방대한 분량의 일기를 남겼다.⁴⁰⁾ 그는 전라도 흥덕현에 살았으며 1759년(영조 35)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766년(영조 42)에 隱逸로서 莊陵參奉에 임명되고, 뒤이어 司圃署의 直長과 別提를 거쳐 翊衛司의 翊贊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1779년(정조 3)에 木川縣監, 그리고 1786년(정조 10)에 全義縣監 등을 역임했다. 아래에서 살펴볼 일기는 그가 강원도 영월에서 莊陵參奉으로 벼슬살이하던 1766년(영조 42) 7월 24일에 쓴 것인데 지방출신 관리와 단골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좀 길지만 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날 아침에 吏曹政色書吏 金文欽이 와서 보았다. 그는 덕준(德峻)의 아들이다. 이전에 덕준이 “처음에 발급한 장릉참봉 임명장[官敎]은 단골리인 제가 작성하기 전에 이미 다른 서리인 李有綱 이름으로 작성되어 전라감영[完營]을 통해 댁으로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지금 마땅히 이를 바로 잡아 임명장을 다시 작성하고 그 뒷면에 제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임명장을 발행한 또 다른 이유는 녹봉을 받으실 때 반드시 임명장과 祿牌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만 광흥창에 가서 이를 대조 증빙하고서 녹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명장을 불가불 한 장 더 발급받아서 서울에 두셔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별도의 임명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왔는데 …… 배면에 김덕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김문흠에게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방법[計仕之法]에 대해 묻자 문흠이 “소인의 아버지가 다년간 이조의 計仕色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해 잘 하는데 참봉의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국왕에게 謝恩肅拜한 날로부터 근무를 시작한 날로 칩니다” …… 라고 말했다. 또 내가 “나의 노친이 몇 년 전에 본도 方伯으로부터 특별히 學行으로 천거를 받아 일찍이 장릉참봉 후보자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만일 혹 다시 후보자가 되면 네가 반드시 나의 노친 이름과 나이를 알아두었다가 벼슬할 수 있도록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하고 노친의 이름과 나이를 別紙에 써서 그에게 주었다. ……

40) 황윤석과 『이재난고』에 대해서는 노혜경, 『조선 후기 수령행정의 실제』, 혜안, 2006; 권오영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참조.

내가 이어서 말하기를 “네가 임명장을 바로 잡아 다시 써 와서 기쁘기 짝이 없다. 내가 만일 장릉참봉으로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잠깐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서울의 광흥창에서 녹봉을 나누어 줄 경우에는 거의 館主人이 관례에 따라 이를 대신 받았다. …… 이번 겨울까지는 마땅히 관주인이 대신 녹봉 받는 일을 해야 겠지만 12월에 다음 해의 녹봉을 나누어 줄 때 응당 녹패를 고칠 것이니 그 이후에는 내가 대신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다.⁴¹⁾

이를 통해 우리는 지방 명문 출신 관리 황윤석과 단골리 김덕준·김문흠 부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⁴²⁾ 즉 관리와 단골리는 단순히 임명장을 도맡아서 작성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무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자문하고 가족의 벼슬자리도 구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며 나아가 녹봉까지 대신 받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관리들은, 앞의 임흥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무 일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먼저 근무 시작일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가 애매했다. 황윤석은 근무 시작일을 현지에 도입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서 서둘러서 부임했다.⁴³⁾ 또 장릉참봉과 같이 僻地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할 경우, 부임한 후 1~2개월 동안 혼자서 계속 근무한 후 동료들과 상의하여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다. 이들이 벽지에 와서 근무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근무일수를 채워 승진하기 위해서였는데 當番과 非番일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근무 일수가 크게 달라졌다.⁴⁴⁾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노련한 서리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문흠은 사은일을 근무 시작일로 치며 장릉참봉 두 사람이 매달 15일씩 나누어 근무하되 출근부[陵所公座簿]에 기록하고 이를 吏曹로 보내어 官印을 받

41) 是朝 吏曹政色書吏金文欽(卽德峻之子)來見. 先是德峻言 初出官教 既以他書吏李有綱姓名填尾 自完營下去矣 小人今當改正填名 且受祿時 須有官教祿牌俱存然後 方可憑照受祿 則官教尤不可不別出一件 以爲留置京中之地 至是 果出別件官教 …… 以金德峻填名而來 余問文欽曰 計仕之法若何 文欽曰 小人之父 多年爲吏曹計仕色矣 以參奉言之 自謝恩日 爲始計仕 …… 余曰 老親 頃年 以本道方伯學行別薦 曾擬莊陵矣 此後或復入望 汝須知姓字諱字年甲 以爲待時 銘念可也 因錄別紙付之 …… 余曰 爾既改正官教以來矣 吾若入番 或在鄉 則京倉頒祿時 館主人 例多代受 …… 今冬則當付館主人 十二月頒明年祿時 應改祿牌 爾則代受可也(『이재난고』 1책, 602~603쪽).

42) 김덕준과 김문흠에 대해서 이재난고에서는 ‘吏曹政色書吏’, ‘吏曹丹骨吏’, ‘吏吏’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43) 大抵參奉計仕 到到任日 報狀吏曹 則吏曹 以此日 始計仕數 故到任不可不急(『이재난고』 1, 595쪽).

44) 一番到任 留直一二月 則此後 與同官相議變通 或爲歸觀 可也 但十二月喪貶時 則不可不赴參 又若一月入番而退 則鄉路絕遠 難於歸去 故退處陵寺 過一月 乃復入番 如此然後 仕數可以速滿 而又可以速遷奉事矣(『이재난고』 1, 595쪽).

아서 후일 증빙할 자료로 삼으라고 알려주고 있다. 또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여 450일이 넘으면 15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는데 두 사람이 한 달을 반으로 나누어 근무했으므로 이를 합하면 30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되어 다른 벼슬자리로 옮길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⁴⁵⁾ 근무처가 강원도 寧越과 같은 벽지이고 비번일 경우에도 근무처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관리들은 서리들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황윤석은 이외에도 단골리에게 때로는 加資⁴⁶⁾나 낭계첩 발급⁴⁷⁾에 대해 지시하고 冊曆⁴⁸⁾ 등을 얻어주도록 부탁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들려주는 都目政에 대한 소식⁴⁹⁾을 전해 듣기도 했다. 또 轉職에 관한 정보⁵⁰⁾를 이들로부터 미리 듣기도 했으며 가끔은 전직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부탁⁵¹⁾하기도 했다. 이들은 閑職을 피하는 방법⁵²⁾ 등에 대해서 자문해 주기도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단골리가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단골리들은 이와 같이 관리들의 까다로운 청탁을 들어주고 자문에 흔쾌히 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무런 대가없이 그저 인간적인 정이나 집안 대대로 맺어온 교분 때문에 이러한 청탁들을 들어주었을까? 물론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윤석이 김문흠에게 다음 해부터 녹봉을 대신 타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자문에 대한 보상이었다. 단골리는 관리의 녹봉을 대신 수령한 후, 필요한 여러 경비들을 덜어내고 관리했는데 단골리 중에는 이를 이용해서 고리대

45) 以參奉言之 自謝恩日 爲始計仕 兩員每一朔 各分十五日 列書于陵所公座簿 送于吏曹 踏印憑照 而以日計仕 凡四百五十日 仕滿十五朔 而養(兩의 誤字 : 引用者註)參奉 各分半朔 故三十朔 乃許遷轉矣 此乃不易之規 初無失仕之慮耳 (『이재난고』 1, 603쪽).

46) 又送牌子于吏吏金德峻 使之齎來加資文書 以爲封內載錄之地 (『이재난고』 2, 7쪽).

47) 金德峻來謁 書給牌子 使出再加郎階成牒 (『이재난고』 2, 12쪽).

48) 金德峻來謁 …… 得新曆中十件小十件 及前例青粧一件 七政一件 以待臘月褒貶上來時 來納 (『이재난고』 2, 12쪽).

49) 吏曹丹骨吏金德峻之子文欽來謁自言 …… 今番都政 仕滿爲首仕者頗多 故進賜主姑難遷轉 大抵六月十二日大都政例有遷轉者 而雖發政時 如有首仕者 亦得遷轉矣 因言 今年兩度赦典 進賜主加資 已以朝散大夫受出 明日當送納主人處 官教覓付小人 以爲自正月 受祿之地如何 余許之 (『이재난고』 2, 52쪽).

50) 朝前 金德峻來見言 今番以三百六十日仕數 得遷而所得義盈 百事口閑奈何 …… 金德峻又曰 進賜將來 或有禁府都事 相換之事 則當如何 余曰 若不南渡大海 北至六鎮 則何謝之有 (『이재난고』 2, 150쪽).

51) 路逢金文欽 使之圖差崇陞 (『이재난고』 2, 291쪽).

52) 是日金德峻言 順陵窠次 果屬於進賜主名下 但今無變通之道 須是權行受由二十餘日 趁來月褒貶而上來 則計仕可縮二十餘日 而窠次退當於司樂寺矣 不然則無可奈何 (『이재난고』 2, 401쪽).

를 하거나 상업에 투자하여 致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론 모든 관리가 단골리에게 녹봉을 대신 수령해서 쓰도록 하지는 않았다. 황윤석의 경우에도 자신이 장릉 참봉으로 영월에 내려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관리들은 단골리로부터 많은 자문과 정보에 대한 댓가로 그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었다. 때로는 그들의 청탁으로 타던 말[馬]을 빌려주기도 했다.⁵³⁾

관리들은 이와 같이 단골리들에게 비공식으로 선물이나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 등으로 부임할 때에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堂參錢 등을 주기도 했다. 당참전은 堂參債라고도 하는데 수령으로 발령을 받거나 혹은 다른 고을의 수령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단골리에게 주는 돈이었다. 황윤석이 목천현감으로 재임할 때의 단골리는 張道興과 그의 아들 張孝彦이었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효언이 이 돈을 받으러 직접 목천으로 내려왔는데 목천에서는 전례에 따라 25냥을 주었다.⁵⁴⁾ 당참채는 고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인근의 예산현에서는 30냥을 주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⁵⁵⁾ 황윤석 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새로운 관직에 임명될 때마다 이조의 서리에게 筆債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⁵⁶⁾

조선시대의 문무 관원들은 廣興倉에서 급료를 수령했다. 이에 비해 서리들은 정해진 급료가 없었다. 따라서 부서마다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종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가장 손쉬운 것이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잡세의 징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참채나 필채 등이 그것이다. 이조의 서리, 그 중에서도 문무관리들의 고신을 작성해주는 이조정색서리는 堂參債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자신과 단골 관계를 맺고 있던 관리들이 수령으로 부임하면 단골리는 곧바로 현지를 방문하여 당참채를 거두어 들였다. 이러한 사실은 『里鄉見聞錄』에 수록된 「天官 李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관은 ‘이조’를 가리키며, 이연은 ‘이아무개 서리’라는 뜻이다.

53) 金德峻 請以十五日借人馬 會葬忘憂里而還 許之 因囑奴子 以明日夕後來待(『이재난고』 2, 401쪽).

54) 吏吏張道興之子孝彦 以堂參錢推出事 率奴馬下來 本縣前例元給二十五兩 而其十四兩 則徵于店人 十一兩 則官員自當 故今亦依施(『이재난고』 6, 133쪽).

55) 조선 후기에 작성된 邑事例를 살펴보면 단골서리에게 주는 당참채가 아예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충청도 예산현 읍사례를 살펴보면 〈應下諸條〉에 수령[邑先生]과 관련된 예산으로 당참채 30냥이 배정되어 있다. 丹骨書吏堂參債三十兩(雜物帖下 惟在處分)(『禮山縣邑誌』, 『邑誌』 8, 忠清道②, 1985, 251쪽).

56) 정구복, 「조선시대 자문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11, 한국고문서학회, 1997, 106~108쪽 참조.

이조의 서리 이아무개가 外邑으로 나가 단골수령들로부터 당참전 수백 냥을 거두어 가지고 장차 서울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려 했다. 마침 날이 저물어 어떤 주막집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매우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 주인에게 물었더니 “일전에 이웃집의 온 식구가 전염병으로 다 죽고 오직 여아 하나만 살아남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낮으로 울기만 한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아무개가 그 사연을 듣고 측은하게 여겨 곧장 그 집으로 가서 여러 상황을 물어 보고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해서 함께 殮葬하고 이어 그 선영에 장사를 잘 지내어준 후에 길을 떠났다.

집에 돌아오자 노친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⁵⁷⁾

이조의 서리 이아무개는 자신과 단골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고을의 수령들로부터 직접 당참채를 거두어 부모를 봉양하려 했다. 그런데 귀경 도중 날이 저물어 어떤 주막집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마침 상을 당해 곤궁에 처한 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참채로 받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과 인부를 사서 장례를 무사히 치르도록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늙은 부모에게 이러한 사연을 말하자 노친은 크게 칭찬해 주었다. 후일 그의 후손들은 이에 대한 陰德으로 크게 번창했다고 한다. 이러한 「천관 이연」의 이야기를 통해 이조의 서리들이 지방을 돌며 당참전을 직접 거두어들였으며 이에 의지하여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조의 서리가 직접 외읍을 돌면서 당참채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한양에 머물던 해당 고을의 京邸吏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황윤석의 『이재난고』와 『이향견문록』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단골리가 직접 관련 고을을 방문하여 당참채를 징수하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새로 제수된 수령들이 이조의 서리에게 주는 수수료(債)가 많았다. 예컨대 參謁債, 古風債, 鋪陳債, 新除授筆債, 署經債, 待令書吏處新除授筆債 등이 그것이다.⁵⁸⁾ 이러한 잡세들은 대부분 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겠지만, 이 중의 일부는 당참채와 같이 서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7)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里鄉見聞錄』, 민음사, 1997, 146~147쪽. 문맥과 문단은 필요에 따라 인용자가 임의로 손질했다.

58) 정구복, 1997, 앞의 글, 82~106쪽 참조.

V. 맺음말

지방 명문 출신의 전현직 관리와 지방에 거주하는 예비 관리[양반 자제]들과 서울의 단골리 사이에 맺어진 끈끈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용어로 ‘夏扇冬曆’이라는 말이 있다. 『東國歲時記』에 소개된 내용인데, 단오에 관리들이 단골리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지에 단골리들이 지방 전현직 관리들에게 책력을 선물하던 풍습을 가리킨 말이다.⁵⁹⁾

1767년(영조 43) 12월에 김문흠이 각종 책력 즉 靑粧曆과 七政曆 각 1책과 中曆과 小曆 각 10책 등을 장릉참봉이던 황윤석에게 바치고 있다.⁶⁰⁾ 물론 김문흠이 이와 같이 많은 책력을 황윤석에게 준 이유는 황윤석이 이미 여러 달 전에 김문흠의 아버지인 김덕준에게 이를 특별히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⁶¹⁾ 그가 김덕준에게 그토록 많은 책력을 요청한 이유는 책력을 주어야 할 친척이나 고향의 친지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내용처럼 조선 후기에는 여름에 관리들이 단골리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에는 단골리가 관리들에게 책력을 선물하던 풍조는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²⁾

황윤석의 경우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서리가 임명장을 발급했다하더라도 단골리가 자신의 이름을 배면에 써넣은 임명장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했다는 것은 이조나 병조의 단골리와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의 연결망이 얼마나 끈끈하고 배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서리들에게 자신의 녹봉을 대신 타도록 하고 대를 물려가면서 단골리의 노릇을 하는 것을 통해 지방 출신의 관리와 중앙의 서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였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관리의 임

59) 冬至 …… 觀象監進曆書 頒黃粧白粧于百官 安同文之寶 諸司皆有分兒 各司吏胥 又有遍問所親之例 吏曹吏各於仕宦家 有勾管掌寫告身者 若出宰 則給堂參錢 故例獻靑粧一卷 盖都下舊俗端午之扇 官分于吏 冬至之曆 吏獻于官 是謂夏扇冬曆 波及鄉曲親知墓村農莊(이재호 역주 『東國歲時記』, 123쪽).

60) 吏曹丹骨吏金德峻之子文欽來謁自言 其父出外未歸 先送靑粧曆一件 七政曆一件 中曆十件 小曆十件 如九月所約(『이재난고』 2, 52쪽).

61) 金德峻來謁 …… 得新曆中十件小十件 及前例靑粧一件 七政一件 以待臘月褒貶上來時 來納(『이재난고』 2, 12쪽).

62) 실제로 단골리가 관원에게 보내준 책력이 현존하기도 한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2010년에 간행한 『正祖의 名臣을 만나다』 101쪽에 정조 대의 명신 최벽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1784년의 시헌력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속지에 “口(此로 추정됨-인용자주)憲書 乃璧姪之骨吏李思龍所送也”라고 쓰여 있어서 이 시헌력은 최벽의 단골리인 이 사룡이 보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명장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단골리를 단지 이조나 병조에 근무하는 서리의 이름에 불과하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과 현직 관리 또는 지방에 거주하는 전직 관리와 예비 관리들과의 긴밀한 관계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지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적어도 중앙과 두 가지 서로 다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했다. 그 중 하나는 서울과 그 인근에 세거하면서 대대로 과거 합격자는 물론 고위관료를 배출한 경화사족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했다. 그래야만 자신이나 후손들이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에 진출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한직이나 외직으로 밀려나지 않고 要職이나 淸顯職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혹 蔭職으로 벼슬자리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그들의 힘이 더욱 필요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설령 관직을 얻지 못하더라도 경화사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매번 새로 부임하는 수령들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을에서 소송 등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수령에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중앙의 서리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왕실과 중앙 관아에서 일어나는 국왕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벼슬살이를 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과거 시험과 인사 관리의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와 또 현재 공석으로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며 어떠한 자리가 곧 교체될 것인지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양반들은 중앙의 서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조와 병조의 서리와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했다. 이 글에서 고신의 뒷면에 나오는 이조와 병조 서리들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³⁾

63) 지방 양반과 경야전의 관계가 '나으리[進賜主]'와 '단골리' 관계였다면 경화사족 출신의 재상과 경야전의 관계는 '주공대감(主公大監)'과 '겸인(僉人)' 관계였다. 이들 관계는 부자 또는 군신 관계로 비유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봉학과 원재영의 논문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Ⅲ, 2006.
-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문서』 1, 1986.
- 수원화성박물관, 『正祖의 名臣을 만나다』, 2010.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里鄕見聞錄』, 민음사, 1997.
- 심영환 외,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 아세아문화사, 『읍지』 8, 충청도 2, 1985.
- 이현구, 『국역 홍무예제』, 회상사, 1986.
- 이재호 역주, 『조선세시기』, 동문선, 1991.
- 정구복 외, 『조선전기고문서집성-15세기편-』, 국사편찬위원회, 1997.
- 대학사, 『국조문과방목』,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7,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재난고』 1,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재난고』 2,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재난고』 6,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남윤씨고문서』, 1986.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83, 2006.
- 강명관, 「조선 후기 경야전사회의 변화와 여항문학」, 『대동문화연구』 25, 1990.
- 권오영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김은미, 「조선 후기 교지위조의 일연구」, 『고문서연구』 30, 2007.
- 김형수, 「고려후기 李子脩 官職 任用資料 4점」,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 김호동, 「조선전기 경야전 ‘서리’에 관한 연구」, 『경남사학』 창간호, 1984.
- 노혜경, 『조선 후기 수령행정의 실제』, 해안, 2006.
- 박재우, 「고려시대의 고신과 관리임용체계」,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박준호, 『예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矢木毅, 「高麗時代の銓選と告身」,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 신해순, 「조선초기의 하급서리 ‘이전」, 『사학연구』 35, 한국사학회, 1982.
- 오종록, 「조선전기의 경야전과 중앙행정」, 『고려·조선전기 중인연구』, 신서원, 2001.
- 원재영, 「조선 후기 경야전 서리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 유봉학, 「일록 ‘공사기고’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상」, 『규장각』 13, 1990.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정구복, 「조선시대 자문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11, 한국고문서학회, 1997.
- 川西裕也, 「『頤齋亂藁』 辛丑日曆 소재 麗末鮮初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2010.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진단학보』 60, 1985.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Abstract

The Relational Network between Administrators from Local Power Families and Gyeongaje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n, Kyoung-mok

Currently, Goshins, administrator appointment letters, seems to be the mostly remained old documents. Since old document researchers have frequent opportunities to read Goshins and contents of Goshins are relatively simple so that they misunderstand as they have good comprehension on Goshins. However, in the contents of Goshins, there are still some words failed for accurate comprehension such as Iri (吏吏) or Byeongjeongri (兵政吏). These words respectively refers Seoris of Yijo and Byeongjo establishing the Goshin. Since they had very close relations with administrators and co-existed for each others, they used to be referred as 'Dangolri(s). In other words, Seoris of Yijo and Byeongjo provided various information on personnel affairs to administrators while administrators sent money as fees or various gifts to Seories. The record of Iri and Byeongjeongri written at backsides of Goshis are the proof secretly showing such co-existing relationships.

Key Words

Yijo, Byeongjo, Civil and Military Administrators, Relational Network, Goshin (Administrator Appointment Letter), Dangolri, Iry, Byeongjeongri, Personal Affair Staff, Local Power Family